

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2006.10.18 ~ 11.1(15일간)

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專門委員 檢討報告



企劃行政委員會

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專門委員 檢討報告書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0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12일

3. 제안이유

학교 환경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 양성 및 범사회적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·관·학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(안 제2조~제6조)

○ 구성 : 30인이내(의장 : 도지사)

- 도의회의장, 교육감, 도교육위의장, 대학 총·학장, 민간사회단체장, 교육행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○ 기능 :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,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, 우수학교 육성·유치에 관한 사항 등

나. 실무위원회 설치(안 제7조)

○ 구성 : 10인이내(위원장 : 기획관리실장)

- 협의회 위원으로 소속된 기관·단체 추천으로 위촉

○ 기능 :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 및 검토,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학교환경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
- 충청북도의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, 학교환경개선 지원, 우수학교 육성 및 유치,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.
-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엄격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발전하여 각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져 오다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으로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, 지방교육재정은 아직도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의 자주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
 - ※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의존재원 95.4%, 자체재원 4.6%
-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는 집행기관의 대표로 하고 있어, 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 학예에 관하여는 대표권 및 집행권이 배제되므로써 교육에 문제점이 있어도 교육청 외에는 아무도 교육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식의 교육행정시스템과 과거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교육은 국가사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자치단체의 장은 그 동안 지방

교육행정에는 무관심하여 왔습니다.

-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역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교육이 주민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정치적 수장인 단체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성 등 교육행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자치단체와 교육청, 대학과의 협조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- 다만, 조례안 제3조에서 협의회를 의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9조제2항의 “위원장”은 “의장”으로 문구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.